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8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김형동·최보윤·우재준

임이자 • 유용원 • 김위상

박대출 • 박정훈 • 한지아

조지연 · 김석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②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 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 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 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6조의2(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입주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환경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 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사
	<u>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u>
	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하여
	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
	<u>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u>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u>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u>
	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
	· 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
	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u>있다.</u>

<신 설>

제16조의2(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입주기업은 「건축법」 제19 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환경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 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 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